

2026. 1. 15.(목)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입법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광주전남특별시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시(이하 “특별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특별시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

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교육자치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시의 책무) ① 특별시는 특별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전남특별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광주전남특별시의 조례(이하 “특별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는 특별시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는 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특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특별시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광주전남특별시장(이

하 “특별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장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편 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 및 운영

제1장 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

제6조(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다만, 특별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명칭	관할구역
광주전남특별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일원 및 전라남도 일원

② 특별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청사와 전라남도 청사를 활용한다.

제7조(광주전남특별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광주전남특별시교육감(이하 “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

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광주전남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

례) ① 특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군·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행정통합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 절차는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시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광역시의회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광주전남특별시의회(이하 “특별시의회”라 한다)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광역시의회·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광역시·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 또는 시·도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특별시의 지방세 세목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그 관할 자치구 및 전라남도과 그 관할 시군에 적용되던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한다. 또한, 특별시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0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관할구역내 둘 이상의 시·군·구(행정구는 제외한다)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⑥ 제5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장 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입법적·행정적 조치와 지원 및 우대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균형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규제자유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제39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제49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에 관한 사항
11. 제87조에 따른 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142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305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14. 특별시의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시개발과 첨단산업,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

제15조(규제자유화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시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은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특별시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

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시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특별시장, 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특별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다

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특별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특별시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 사무의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할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환경 및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특별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특별시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와 권한을 동시에 이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제18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가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이관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이관에 따라 업무단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시와 관련 업무시스템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관사무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의 규모·방법·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제2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에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시 관할구역에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편 자치권의 강화

제1장 지방의회

※ 의견수렴 중(대전충남특별법 발의안(2025.10.2.) 인용)

제21조(특별시조례) ① 특별시의회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 제정의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특별시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경비) ① 특별시의회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특별시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특별시의회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특별시장에게 송부한다.

제24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원(이하 “특별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6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자치행정

제27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지방자

치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명으로 하되,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4.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④ 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인건비 지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설치일로부터 10년간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의 행정통합으로 인한 조직·인력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따른 재정 불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소방사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직속기관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특별시의 소방사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에는 부분부장 2명을 두고 부분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특별시의 소방사무 수행과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전라남도 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특별시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는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④ 특별시교육감 소속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광주전남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특별시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 · 승진임용순위 ·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 · 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 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 · 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32조(국가와 광주전남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

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특별시 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

교육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광주전남특별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34조(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설치에 따라 원거리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직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직원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특별시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특별시와 인접한 시·도지역에서 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한다.

제36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

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 1항에 따른 특별시장 소속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자치재정

제39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2. 종전의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교통 연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시설의 개선·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시설의 설치 및 국립 단체 분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제6조 및 행정통합에 따라 시·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8.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시·군·구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 ① 국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③ 국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역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경제지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해당연도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1,000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해당연도 부가가치세 총세입액의 1,000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법인세 중 해당연도 법인세 총세입액의 1,000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

제42조(광주전남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특별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00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간 매년 특별시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특별교부금 지원) ① 국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광주전남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4조(통합에 따른 지원금의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에 교부되는 제41조 통합경제지원금 및 제43조의 통합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45조(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광주전남특별시 계정 설치) 국가는 특별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주전남특별시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설치에 따른 배분액이 종전 총규모 대비 배분액 비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제47조(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별시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000으로 한다.

제48조(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 시조례로 정한다.

제49조(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50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의 발전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학예에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특별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별시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51조(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

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대하여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제52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특별시세(중전의 광주광역시세와 전라남도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시세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특별시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특별

시세 감면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4장 자치경찰

제56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국가는 특별시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특별시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

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특별시장은 제6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광주전남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60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 제64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와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교육감이 정한 자체 감사기구가 수행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2명은 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④ 특별시장, 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

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1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시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63조(자치감사계획)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사람: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의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협조 요구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특별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로 하여

금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66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6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67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이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7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4편 교육자치

제1장 교육감

제69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70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특별시교육감은 이 법 다른 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제2장 교육행정

제71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2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운영할 수 있다.

제72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의결기구로 설치한다.

②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교원정원 운영 및 특별전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장하고, 특별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교급별 교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시교육감은 특별시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예정 인원의 10/10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 할 수 있다.

제74조(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①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법 제30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 운영의 자율성

제75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3조,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 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자율학교 운영 특례) ① 특별시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특별시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교육감은 필요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영재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지

정·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이 아닌 교육전문인력으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 방법 및 기준은 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세부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⑨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79조(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② 특목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목고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특목고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목고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8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 내에 외국교육기관(“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교육감 또는 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서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특별시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특별시장”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이 법에서 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1조(광주전남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과 특별시교육감은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안의 교육국제화 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 및 육성에 관하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으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으로, “교육감”은 “특별시교육감”으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특구위원회”로, “대통령령”은 “특별시조례”로 본다. 다만,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한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는 제1항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 생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2조(농어촌학교·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 및 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 내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내 체류 중인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부모의 활동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4조(초·중·고등교육 연계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교육감은 대학과 초·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특별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고등교육 관련 사업의 기획·조정 및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1.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의 개발·운영
2. 고등학생 대상 대학 수준 교육 프로그램, 조기이수·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

3. 대학과 연계한 교원 전문성 개발, 예비교원·현직교원 연수 및 실습 프로그램
 4.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취업 연계 프로그램
 5. 그밖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역할 분담, 재정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교육감과 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85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 대학이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6조(지역 전략산업 특성화학과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특별시 관할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 전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학과의 지정 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제1장 광주전남특별시 개발 계획

제8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전남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및 광주전남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제·산업·교통·문화 등 광역통합발전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경제권 설정 및 광역생활권 개발·정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등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공간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9. 지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지역의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5. 지역의 방재방법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
16. 지역의 전략산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8.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0. 지역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21. 지역의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22. 지역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3. 지역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4. 지역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5. 지역 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26.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7. 각종 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8. 광역시설계획(동일한 생활권 내에 있는 교통,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9. 민주·인권·평화·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89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에는 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기본계획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기본계획심의회) ① 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기본계획심의회(이하 "기본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23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된다.

③ 기본계획심의회는 위원장은 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장이 정하는 부시장과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기본계획심의회는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특별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심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0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1조(기초조사) ①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93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2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제93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특별시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⑦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특별시장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9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3조제9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해제·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 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95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93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6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은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7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98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특별시장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3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9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제93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0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전남특별시계정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특별시장은 제93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산업

제102조(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① 국가는 에너지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종합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에너지 미래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에너지 미래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
2. 에너지 미래도시의 운영, 성과 확산 및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추진단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범정부 차원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에너지 미래도시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특별시장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 미래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국가가 직접 에너지 미래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에너지 미래도시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미래도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에너지 미래도시 지정의 필요성
3.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별 조성계획
4. 에너지 미래도시 재생에너지 공급 및 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6. 자원조달방법
7. 산업유치계획
8.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9. 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에너지 미래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업·재생에너지공급·정주시설 등의 연계가 용이할 것

4.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104조(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반시설 및 송·변전 등 공동 인프라 구축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

3. 재생에너지지구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계통 연계 허용

4.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완화

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지원

6. 망이용요금 등 부대요금의 감면 및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7.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8.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 선정 및 조사 면제
 9. 에너지 분야 연구센터 설립 및 연구개발·기술개발사업 지원
 10. 배후정주지구 내 보육기반 확충,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1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및 금융 지원
- ② 추진단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1항의 특례 및 제2항의 인·허가 의제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기금의 매년 세출의 100분의 10을 특별시로 지원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06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은 5만킬로와트, 풍력은 10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

에 한정한다)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7조(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시장이 공동으로 지정권자가 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절차, 협의 방식, 권한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

2.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지반조사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

3. 두 개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제109조(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특별

시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0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

①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비율 및 부과·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0조에 따른 재생에

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금을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에너지 복지사업,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11조(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특례) ① 해

상풍력 발전단지의 연계 및 계통 접속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전력망 설비”에 포함되는 송전·변전설비로서, 같은 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접속설비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개발사업추진 절차, 설비범위, 비용산정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특별시장은 「항만법」 제3조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3조(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농촌지역 경

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이하 “영농형 태양광”이라 한다)하는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태양광

설비는 생업을 위한 농업시설로 본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제1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 또는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특별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며,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모든 농지에 허가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④ 영농형 태양광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구가 조성된 농지에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 및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영·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⑧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농작물의 재배 또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이 영농을 가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영

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작물 재배현황, 수확량, 경작일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농지에서 표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연간 기대 경작수익의 3배 이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부과 절차 및 감경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농계획에 따른 농작물 재배 또는 생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태양광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농작물 재배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경우

⑫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를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 취소
2.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의 해제

제114조(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 허가·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지전용을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되 농업·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는 제112조제9항에 따른 영농 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영농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 및 지원) ①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경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설비와 다른 구조와 높이로 설치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2조에 따라 지정된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설비용량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3,000킬로와트 이하: 1.7

나. 3,000킬로와트 초과: 1.5

2. 제1호의 기본가중치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우대 가중치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에 따른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에 따라 발생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의 일부를 제11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해상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에너지 복지사업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 시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준하는 지원과 더불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을 우선 및 수시지원하여야 하며, 정책자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금융기관의 다양한 담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6조(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완충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와 완충녹지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7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양광·풍력·수소 등 분산에너지원과 인근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송·배전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직접 전력거래(PPA) 적용을 위한 송·배전선로·계량·계약체계 구축 비용
3. 송전선로·전신주·배전선로·지중화 설비 등 소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서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분산에너지 연계형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가상발전소(VPP) 연동에 필요한 전력망 보강 비용
5.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수용성 확보 비용, 에너지 복지 및 지역개발 지원 비용 등
6. 그 밖에 특별시 내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 및 배전망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특별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

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되, 특별시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8조(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하여 설치된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설비의 기능, 계통 기여도 및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4.5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2. 제1호의 가중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에 따른 우대 가중치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계통안정화 장치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중복 적용된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발생한 추가 수익의 일부를 제11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근 지역의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품질 개선
2.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에너지 복지사업
3.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

제119조(지방공기업 및 광주전남특별시의 직접 투자) ① 지방공기업과 특별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 및 특별시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제11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에 귀속되어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라는 목적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특별시가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로 얻은 수익을 통해 이익 공유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시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세한다.

③ 지방공기업 및 특별시의 출자·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0조(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① 특별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형·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기금의 조성·운용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 ③ 특별시장은 재생에너지 수익의 주민 환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민 이익공유금의 지급 및 공공복리 증진사업
 2. 재생에너지 재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⑤ 기금의 운용·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은 특별시장이 운용·관리한다.
 2. 특별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기금의 건전한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특별시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또는 이익공유 재원을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통합·전환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통합·전환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귀속되는 이익 수준이 현저히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입찰 가점에 관한 특례) ①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도 사업에 우대가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출자지분율, 공동 출자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대가격(공공주도 사업 여부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부여되는 가점 또는 우대 단가를 말한다.)을 상한가격의 범위에서 고정가격계약 단가에 합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출자지분율은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발전원별 입찰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22조(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

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0.1 이상을 우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호의 참여기관이 발전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요건 따라 발생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을 제119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에 귀속에 귀속하여,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에너지 복지사업 및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제123조(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제124조(지방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특

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출자를 포함한다)하는 특별시 지방공기업에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 출자를 위한 사채발행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할인 등 금융지원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승인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5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설비용량 1,000

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이하 “주민참여수익금”이라 한다)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100분의 70
2. 발전소 소재지 특별시: 100분의 30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군·구에 배분된 수익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된 수익금은 제11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며, 광역 단위의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 기술개발 지원 및 도내 낙후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적용되는 금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제2항에 따른 비율로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제126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특별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이하 “메가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메가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국가 전략 기반 시설로 지정·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인공지능컴퓨팅센터 및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메가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메가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전략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메가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 및 RE100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력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우선 공급 및 전용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체결 지원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력요금 차등제 적용

⑥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전략 실현을 위한 필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은 메가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7조(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광주전남특별시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을 설

립한다.

③ 제2항의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융합연구
2.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조성 및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특화 체험센터 운영

④ 국가는 제2항의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특별시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

제12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별시장이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별시장이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시 특별시장이 추천한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129조(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실증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반 건축물, 스마트 인프라 및 자율형 도시시설의 설치에 관한 건축기준 완화
2. 실증 목적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규제의 일부 완화
3. 자율주행, 개인형 이동수단,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4.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기간은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실증 성과 및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실증지구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인공지능 실증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마스터플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증 대상 기술 및 서비스의 범위
2. 도시공간·건축·교통·에너지 연계 실증 계획
3. 안전관리 및 주민 보호 방안
4. 실증 결과의 제도화 및 확산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0조(인공지능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한 지역을 인공지능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이하 “메가샌드박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메가샌드박스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제127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국가 인공지능 혁신 진흥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메가샌드박스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특별시장은 첨단 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특별시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2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

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특별시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 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

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4조(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에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팹의 구축·운영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광주전남특별시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설립한 “한국광기술원”을 “광양자기술원”으로 확대 할 수 있다.

제135조(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시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종합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미래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2. 산업·연구·주거시설의 유기적 배치 및 초광역 단위 산업거점 간 연계를 포함한 도시 공간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모빌리티 전용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 등 혁신적 기반시설 구축 및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미래도시의 운영, 신기술 실증 성과 확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추진단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범정부 차원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특별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광주전남 미래모빌리티 메가클러스터(이하 “메가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메가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5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광주전남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메가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은 메가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는 메가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7조 (모빌리티 메가샌드박스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

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시를 모빌리티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된 특별시에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동법 1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동법 제1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제16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스마트 혁신사업 등, 제49조의 2 규제의 신속확인, 제50조 스마트 실증사업 등,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등, 제53조의2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53조의3 스마트 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138조(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부품 전문기업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는 미래자동

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0조(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 및 회랑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과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및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시행의 허가·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4항과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1조와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

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와 제11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첨단전략산업

제1절 미래신산업

제142조(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우선 지원) ①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을 특별시가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데이터산업
2.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에너지산업
3.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드론·항공 산업
4.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백신, 합성바이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 반도체 산업
6. 양자산업
7. 지능형 로봇산업
8. 첨단 모빌리티 산업 및 미래차 부품산업
9. 수소생산·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10. 세라믹 산업, 첨단·희유소재 산업
11. 코스메틱 산업
12. AI가전산업
13. 광융합산업
14. 해양융합산업

15. 그 밖에 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반영된 특별시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실증사업, 시범사업 및 공공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반영된 첨단전략산업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완화 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반영된 첨단전략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기관, 공공기관 및 앵커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이전·설치 및 투자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반영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제1항에 반영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정부는 특별시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용함에 있어 특별시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 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사업에 대하여 국민성장펀드 출자, 투자 및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143조(첨단전략산업 및 국가기간산업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과 제165조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

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4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②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산업육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산업 범위 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5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46조(산업단지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전부 감면한다.

제1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제2항·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48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조성되는 산업단

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산단 등)에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준공된 산업단지(국가산단 등)에 대해,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제149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제150조(첨단전략산업 광역 메가샌드박스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광주전남 특별시 전역을 첨단전략산업 광역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특례 및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주전남 메가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만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 제4조 및 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 및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실증 인프라(시험장, 실증센터, 통신망, 전력망 등) 구축비의 전액
인증·허가·안전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전액 면제

3. 배상책임보험료의 100분의 50

4.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전문가 자문비

5. 사업화 성공 시 공공조달 우선 구매 및 판로 개척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증 촉진에 필요한 비용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집행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시장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지원한 재정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1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2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153조(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업발전법」 제11조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 획득

② 산업연대협력체 참여 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동 행위에 대하여는 산업의 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행위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적용의 예외(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1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4조(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클러스터 연계·통합 관리) ①

특별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

정·운영되는 각종 특구 및 클러스터를 연계·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클러스터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5조(정부출연기관 설립 및 이전 등에 대한 특례)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및 이전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요청한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및 이전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6조(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관할구역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건립을 요청하면 해당 지역에 우선 건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첨단의료산업의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 조성·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8조(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9조(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 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 및 관련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1. 우주산업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체의 입주 및 지원 시설
3. 우주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4. 우주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소 운영지원 시설

5. 기타 우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④ 국가 및 특별시장은 우주 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 ⑤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특별시장은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특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160조(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은 특별시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용수·폐수·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그 밖에 특별시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지원 사업에서 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시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3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국방산업의 육성과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 내 관련 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방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국방 관련 제조업체의 입주 및 지원 시설
3. 국방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4. 국방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소 운영지원 시설
5. 기타 국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

③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164조(함정 유지보수관리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해군 및 해양 경찰 함정의 정비·수리·개조(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정 정비·수리·개조 시설의 확충
2. 함정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시설

3. 함정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시설
4. 함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5. 그 밖에 함정 정비·수리·개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함정 MRO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세제, 재정,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석유화학·철강·조선

제165조(국가기간산업 행정·재정 우선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유화학산업
2. 철강산업
3. 조선산업

② 국가는 제1항의 국가기간산업 육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전환,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특별시 내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역을 석유화학 산업전환 특구(이하 “산업전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전환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노후 석유화학 공정의 고도화 및 고부가·정밀화학 공정 전환
2. 순환경제, 재활용, 바이오 기반 화학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3. 저탄소·무탄소 석유화학 공정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4. 수소,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산업과의 연계 사업
 5.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및 인력 재교육 사업
- ③ 국가는 산업전환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철강산업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 내 철강산업 집적지역을 철강산업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전환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환원 제철 및 저탄소 철강 공정 전환
2. 철강 공정의 디지털화·고도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3. 철강 부산물의 자원화 및 순환경제 촉진
4. 철강산업과 에너지·소재 산업 간 융합 신산업 육성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전문인력 재교육

③ 국가는 산업전환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조선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친환경·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가기간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 내 조선산업 집적지역을 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조선산업 산업전환 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연료(전기·수소·암모니아 등) 기반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실증
2.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조선, 디지털트윈 등 조선 공정의 디지털화·고도화
3. 조선산업 생산공정의 자동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4. 조선산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직무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

③ 국가는 산업전환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기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산업전환 특구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 특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

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170조(석유화학단지 및 철강단지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례) ① 정부

와 특별시는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과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의 결정기준은 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사업자는 입주에 따른 입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며, 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71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문화·관광산업

제172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3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5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가 마한·후백제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마한·후백제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공연·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 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공간 조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마한·후백제의 역사 발굴 및 교육, 홍보 및 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에 관련 국립문화시설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176조(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

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 내에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별시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한다.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7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 없이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는 일괄 의제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국립전문예술극장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부지 및 건립·운영에 관한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④ 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부지 및 건립·운영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보며, 입주하는 국내외 콘텐츠 기업 및 관광 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성·지원되는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제17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의 확대 및 특례) ① 국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조성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청을 특별시 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범위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③ 국가는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자체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제179조(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자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유구역 내에서 양도·거래되거나 보관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세 특례를 적용한다.

1. 미술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의 면제
2. 미술품 거래 및 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3. 자유구역 내 입주한 경매사, 갤러리, 수장고 운영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③ 금융위원회는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자유구역 내에 미술품 전문 보세창고 및 보세전시장

을 설치하여, 통관 절차 없이 미술품을 자유롭게 반입·반출·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180조(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권) ① 국가는 한국 문화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를 특별시에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는 문화유산의 디지털 가상 모형 구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특별시 소재 기업 및 연구기관은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으며 실증시설을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제181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광주전남특별시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관광특구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제182조(관광지 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87조 제1항제2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3조·제94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83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제8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4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특별시장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1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필요 시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카지노 사업이 관광, MICE, 해양레저 산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금액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营业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8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6조제1항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광주전남특별시의 출연금

2. 제18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광주전남특별시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87조(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동) ①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88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특별시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으로, “대통령령”은 “특별시조례”로 각각 본다.

제189조(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 치유, 명상, 안티에이징

② 특별시장은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

공한다.

제190조 (도서·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흥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 주도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및 시설 설치 기준

2.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 따른 전용 허가 기준

③ 특별시장은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영향 진단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91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농림·수산·해양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관

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거점 도시로서 정책조정 및 사업 연계를 총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92조(관광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관광특구의 면적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거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장 농수축산업

제193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지정 기준·절차, 조성계획의 수립 및 육성지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육성지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4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권한이양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서는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특별시장이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특별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이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5조(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함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6조(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 등) ① 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계획(이하 “특별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별시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특별시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제198조(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① 특별시장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 종자산업의 육성

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지에 신품종 육성, 육종 시험, 종자 증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육종 연구를 위한 고정식 온실, 망실(網室) 및 시험 재배 시설
2. 신품종 특성 검정 및 육성 계통 보존을 위한 시험포 관련 부대시설
3.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연구·실증 시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농지의 우량한 토양 보전과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 관리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99조(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는 특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0조(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특례) ①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진흥구역의 실행계획 집행상황을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김산업진흥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보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변경,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01조(해양수산업 및 해양레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 해역에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이 조에서 “기본지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기본지침은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 특성, 지역 수산업 여건 및 전략 품종 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 및 절차는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은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승인 및 면허 처분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시행한다.

1. 개발계획 신청의 접수 및 검토
2. 개발계획의 승인
3. 면허처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허가 통보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수산자원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 보전 및 어선안전 확보에 필요한 국가 단위 규제

⑤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지침 및 승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⑧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

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60조 및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⑩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⑪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⑫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⑬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⑭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⑮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⑯ 특별시장은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

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⑰ 제16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⑱ 특별시장은 제16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1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2조(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의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 해양치유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은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3조(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특별시장은 촉진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0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

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하며, 국가는 권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국가어항의 개발·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5조(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해양 공간의 자치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특별시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에 따른 특별시 갯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별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 · 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갯별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 같은 법 제20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갯별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갯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갯별관리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별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별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별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갯별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갯별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갯벌생태계 보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갯벌생태계 관리 및 보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는 특별시장이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206조(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특별시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장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별시장이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

항

3.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 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7조(해양수산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시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갯벌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
2.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한 사업

제208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 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09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특별시의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0조(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공급식 공급 지원 특례) ①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에서는 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가 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군부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공공기관 및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1조(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은 「농업재해보험법」 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 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 지수(특정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객관적 기상 데이터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 관측 데이터의 확보 및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특별시장은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전남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은 상품 설계 시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등의 정밀 기상 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특별시장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장 기후·환경

제2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대상사업 중에 다음 특구·지구 등에서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영농형 태양광 지구
2.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17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4. 제203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농촌활력촉진특구

5. 제232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지정한 투자진흥지구

6. 기타 특별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사업으로 지정·고시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의2까지,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그 밖에 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13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시장으로 본다.

제214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15조(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군구 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2. 인구현황 분석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제216조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시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 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이동·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정·분석·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분석·검증을 위한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입주 지원
8.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7조(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의 탄소포집·이용·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18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특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의 정부의 권한은 특별시의 권한으로 하고, 특별시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③ 특별시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1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에 따라 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0조(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로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1조(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의 관할 구역 내 하천 중 「하천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222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특별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3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특별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특별시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한다.

③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4조(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주전남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5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없이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226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특별

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7조(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제한지역 심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 권한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제

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7조제5항, 제50조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제22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

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5항·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29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산림이용 진흥과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정 목적, 이용계획 및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산림자원 및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토사 유출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7. 그 밖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2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의 의제 기준 및 효과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⑥ 국가와 특별시는 진흥지구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개발계획 협의, 고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30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6. 진흥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한 조합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 및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 또는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은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특
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까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 파산 등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특별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
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종전 시행자가 보유하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지위를 승계한다.
- ⑦ 시행자의 지정·취소·대체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위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⑧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범위, 수립·승인·변경, 의견수렴 절차, 제출서류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31조(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적극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

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⑥ 사업시행 절차 중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는 제230조 제8항·제9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⑦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94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또한 인·허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⑧ 국가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글로벌 투자촉진

제23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기본계획심의 회의를 거쳐 광주전남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3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특별시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 ② 국가 및 특별시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특별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특별시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34조(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현금지원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특별시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과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과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관할구역 내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경우 그 절차와 체류자격,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37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39조(기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원 이

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240조(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1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와 특별시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2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특별시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 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특별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특별시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제243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특별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간의 계획 및 이용

- 제2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 및 시·군의 기본계획(시·군·구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같음한다.
- ④ 특별시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 ⑤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

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5조(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① 특별시

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보전·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농촌·해양·도서를 포괄하는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 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정비·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전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각종 공간·도시 관련 계획은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도시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도구역의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24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다만,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2.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및 미반영시설의 협의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두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제247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8조제3항(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특별시장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제5항, 제5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248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제249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광주전남특별시 귀속분에 한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0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제7항, 제77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 제70조제2호·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특별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

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다만,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④ 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51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행정권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이 추진하는 「건축기본법」 제20조 각 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단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시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별도의 승인 없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52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및 제16조(준공검사)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5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

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4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대상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255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특별시장은

「주택법」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특별시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을 광주전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8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256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

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광주전남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제10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8조(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특례) 특별시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259조(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및 지원사업과 그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서남권 중심 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특별시장이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③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9조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의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방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공항 조성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훼손지 복구계획의 수립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3.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적용

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1등급 및 2등급지의 원형보존 및 신규지정에 관한 기준

⑤ 특별시장은 군 공항 종전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용도 및 밀도 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60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61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별시장 및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2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특별시 안

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 라 한다) 현황을 특별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이하 “지장물등” 이라 한다)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다만, 처분 대상 지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활용 대상 지상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장물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지장물등을 제거하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의 지장물등을 제거·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징발 해제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본다.

⑧ 국방부장관은 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미활용 군용지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광주전남 특별시 또는 관할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263조(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독의 특례)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7조제1항(제2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장 광역교통 · 물류기반

- 제264조(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과 전라남도 관할 구역을 연결하거나 그 영향권에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로 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도로 건설 및 개량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는 전액, 보상비·공사비 등은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은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65조(특별시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사업이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3.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4. 「도로법」 제11조에서 지정받은 고속국도 중 특별시가 요구하는 특별시 관할구역의 고속국도의 확장 및 증·개축, 시설물 개량
5.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6.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연결 지방도로와 섬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륙·연도교
7.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도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특별시가 요구하는 특별시 관할구역의 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개량

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설계비는 전액, 보상비·공사비 등은 100분의 70 이상을, 제1항제4호는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설계비는 전액,

보상비·공사비 등은 100분의 50 이상을, 제1항제8호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시설물 개량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보상비·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도로법」 제8조에 따른 5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절차가 진행 중인 고속국도,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개량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66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특별시 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특별시 관할 구역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 및 철도의 신설·개량
3.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 확충 및 개량

제267조(철도 및 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은 특별시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광주·전남 연결사업
2. 광주·전남과 타 권역을 연계하는 초광역 교통망사업
3.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륙·연도에 관련한 사업
4.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특별시 내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

제26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운영비용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국가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시민 경제 안정 등을 위하여 동결되는 통행료에 대한 보전 비용
3. 「탄소중립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4.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손실비용

② 제1항 이외에도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특별시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9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특별시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270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에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제27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플랫폼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일부 지역

에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은 특별시 내 유상운송 허용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는 특별시 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업자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⑦ 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⑩ 특별시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⑪ 특별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⑫ 특별시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⑬ 제1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 운임·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

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⑭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⑮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2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 시민복지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장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 관할구역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국가는 특별시를 경유하는 광역철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에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

④ 국가는 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건비

2.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

3. 바우처 택시 사업비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제273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4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

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특별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운용한다.

제275조(교통시설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운용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특별시 통합교통계정’ (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계정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산 편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하지 아니하고 총액 한도와 성과지표만을 설정하여 교부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포괄보조금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각 계정 및 사업 목적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맞추어 세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고 예산을 상호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은 통합계정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이체·전용·이월 등 운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권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 기준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276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

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7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가 세계적인 물류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별시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78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특별시의 국제물류특구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이 규정한 규제혁신 및 특례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④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⑤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⑥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⑩ 특별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79조(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 완화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호에도 불구하고 도 내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특별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편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제1장 사회안전망

제280조(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 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1조(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특별시에 보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5.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제282조(광주전남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①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 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단, 국가는 돌봄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83조(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소재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4조(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시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5조(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종전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6조(재해예방사업에 관한 특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사업의 사전설계 검토는 특별시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287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88조(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특별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의2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

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제2장 지역순환경제

제289조(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특별시장은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0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1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은행 설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특별시 보유한도를 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93조(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특별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⑥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전남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4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특별

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시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95조(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6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① 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 광주전남 디지털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체계
2. 지역 공공자산의 시민 참여형 운영 시스템
3. 지역기업·소상공인 거래 지원 디지털 플랫폼
4. 시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공동투자 플랫폼
5. 공익활동 참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시스템
6. 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플랫폼

제3장 시민문화 진흥

제297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⑤ 국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98조(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협의 없이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특별시에서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9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전단·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단서,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전문체육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0조(문화재생 특별지원금 신설) ① 국가는 특별시장이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시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화재생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특별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한다.

- ④ 국가는 조성된 문화재생 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초기 5년간 운영비 전부를 지원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301조(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국가 출연 특례) ① 특별시장은 문화 예술의 융성과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특별시 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로부터의 출연금
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기금운용 수익금

③ 국가는 기금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출연한다. 단 특별시가 설치되는 회계연도에는 100분의 20을 출연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 특화 예술 축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2. 지역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사업
3. 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4. 기타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진흥사업

⑤ 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년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제302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303조(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4조(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을 우대하여 공공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과 서로 합의하고 특별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5조(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7편 보칙

제306조(공공기관의 협조) ① 특별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광주전남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307조(감독) ① 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08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9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편 벌칙

제31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66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312조(과태료) ① 제30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시의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특별시의 특별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및 해당 시·군·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⑤ 종전의 광주광역시회의의원 및 전라남도회의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특별시회의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의 특별시장(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4조(특별시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로 본다.

② 특별시의 특별시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특별시가 승계한다.

② 특별시 설치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명의를 특별시의 명의로 보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소관 공유재산은 일괄 등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특별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조례나 규칙은 특별시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의 권한과 소관 사항은 특별시장의 권한과 소관 사항으로 본다.

제8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이나 이 법에 따라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에 따른다.

제10조(법정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수립·시행된 법정계획 및 이에 준하는 계획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 교통, 복지 등 행정서비스는 특별시장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